

HPAI 발생 방역지역 해제 관리 강화 방안

1. 배 경

□ '16.11월 이후 HPAI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방역 지역 해제에 따른 재입식시 재발생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검토 개선 및 강화가 필요

- 현재까지 가금농가에서 지속 발생 중에 있고 철새에서도 HPAI 항원 지속 검출되고 있어 야외 바이러스가 노출 가능성이 높음
- 다발지역의 경우 여러 방역지역이 중첩되어 있고 이전 재입식 이후 재발생 한 사례가 있음

※ 관련 규정 :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, AI 방역실시요령(고시) 제20조, 제21조

◇ 방역대 해제 요건 : 가전법 제19조, AI 방역실시요령 제20조, 제21조

- (관리·보호 지역)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및 오염의심물건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이 끝난 날부터 21일 경과 후 예찰지역으로 전환
- (예찰지역)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및 오염물건 등의 세척·소독·소각 또는 매몰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닭, 오리 및 빈축사 환경시료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 이후 해제
- * 다만 사육형태, 발생상황, 교통·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
- * 관리지역 : 0~500m, 보호지역 : 500m~3km, 예찰지역 : 3km~10km

□ △ AI 발생 지속, △ 야생철새 바이러스 지속 검출 △ 과거 방역대 해제 후 재입식 농가 재발 사례, △ 설 기간 유동인구 증가 등 확산 가능성을 감안시 관리 강화 필요

*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관련 협의회('17.1.16일)를 통해 방안 마련

2. 현 황

□ 발생지역 및 이동제한 해제 현황(1.13. 기준)

시·도	이동제한 방역지역		해제지역 방역지역		잔여지역 방역지역		방역지역 농가수
	농가	철쇄도래지	농가	철쇄도래지	농가	철쇄도래지	
12*	124	36	4	11	120	25	4335

* (가금) 부산(1), 인천(1), 세종(6), 경기(47), 강원(1), 충북(22), 충남(21), 전북(11), 전남(12), 경남(2)

3.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방안

□ 예찰지역 해제 요건

- (기 해제요건) 시장·군수는 ①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 살처분, ②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·소독·소각 또는 매몰이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 후 예찰지역 안의 닭 검사와 오리검사 및 빈축사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검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 이후

⇒ (강화 요건) 예찰지역 해제시에는 [세척·소독 완료 후 30일이 경과한 발생농장 및 예방적살처분 농장과 출하농장(최근 7일 이내 제외)]의 분뇨 등에 대한 항원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

□ 다수 방역지역(3개소 이상) 일괄 해제

- 다수 방역지역(3개소 이상)이 서로 겹쳐 있는 경우 마지막 지정 방역대 해제 기준일에 일괄 해제

* 방역지역간 위험요인이 상호연계되어 개별 방역지역별 해제시 위험관리가 어려움

- 다만, 관할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축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일부 방역지역을 우선 해제하는 것은 가능

* (심의회 추진 절차)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개최 요청(시·군) → 심의회 개최(시·도) → 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(시·도) → 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 조치(시·군)

4. 행정사항

- 향후 방역지역 해제시 관할 시·도에서는 붙임1 확인서를 첨부하여 우리부(방역관리과), 검역본부(AI예방통제센터) 및 타 시·도에 통보

[붙임 1]

고병원성 AI 발생 방역대 해제 확인서**□ 방역대 현황**

방역대 내 최초 발생농장 : (농가명)	(축주명)
방역대 내 발생농장 현황 : 발생일자, 축종, 농장주명, 주소	

□ 점검사항

점검항목	점검결과	비고
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·매몰 여부	(O, X)	
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·소독·소각 또는 매몰 조치	(O, X)	
관리 및 보호지역의 예찰지역으로 적절한 전환 여부 (발생농장 살처분·매몰, 오염물 세척·소독 등 조치 후 21일 경과)	(O, X)	
예찰지역 안의 닭 검사(임상검사, 필요시 혈청검사 및 항원 검사) * 닭에 대한 임상검사 실시, 항원검사는 폐사축을 이용하여 검사	(O, X)	
예찰지역 안의 오리 검사(혈청검사 및 항원검사) * 오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	(O, X)	
예찰지역 안의 사육하지 않는 빈축사의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검사 *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과 출하농장(최근 7일 이내 제외)의 분뇨 등에 대한 항원 검사 결과	(O, X)	

확인자 : 소속

직

이름

(서명)

AI 확산 방지를 위한 재입식 관리강화 방안

2017. 1.



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

농림축산식품부

I. 현 황

□ (발생상황) '16.11.17일 해남(산란계)과 음성(육용오리) AI 확진 이후,
'17.1.22일 현재 334개 농장에서 AI 발생, 3,259만수 살처분

○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42건(H5N6: 40, H5N8: 2) 검출

□ (방역대) AI 발생 이후 130개 방역대가 설정되었으나, 발생 이후
30일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4개 방역대가 해제(1.22기준)

시·도	이동제한 방역대	해제지역 방역대	잔여지역 방역대	방역대내 농가수
12	130	4	126	5138

○ AI SOP 상 살처분 매물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방역대가
늘어남에 따라 방역대를 해제하려는 지역은 지속 증가 예상

◇ 방역대 해제 요건 : 가전법 제19조, AI 방역실시요령 제20조, 제21조

- (관리·보호 지역)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및 오염의심물건 세척소독소
각 또는 매물이 끝난 날부터 21일 경과 후 예찰지역으로 전환
- (예찰지역)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및 오염물건 등의 세척·소독·소각 또
는 매물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닭, 오리 및
빈축사 환경시료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 이후 해제

* 다만 사육형태, 발생상황, 교통·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
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

* 관리지역 : 0~500m, 보호지역 : 500m~3km, 예찰지역 : 3km~10km

□ △ AI 발생 지속, △ 야생철새 바이러스 지속 검출 △ 과거
방역대 해제 후 재입식 농가 재발 사례, △ 설 기간 유동인구
증가 등 확산 가능성을 감안시 방역 강화 필요

II. 재입식 관련 점검 강화

《 기본 방 향 》

◆ AI 재발 방지가 가능한 농가에 한하여 재입식 허용

1] 재입식 절차

(1) 발생농장(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 농장 포함) : 4단계 재입식 절차 준수

- (1단계) 시·군 : 분변처리 등 청소·세척·소독 완료 가축방역관 점검 철저
⇒ 입식전 청소·소독, 소각·매몰, 강화된 방역시설에 대한 농장 점검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입식시험 중지(참고2)

①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(알·깃털 등) : 소각 또는 매몰

② 가축의 분뇨 : 농장내 매몰. 다만,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

③ 배합사료·조사료·깎짚·왕겨 등 : 소각 또는 매몰(단, 지대사료 등 포장되어 소독조치가 가능한 경우 제외)

④ 차량·축산기자재·장비 등 : 세척 및 소독

⑤ 가축의 치료에 사용한 약품류 : 소각 또는 매몰

- (2단계) 검역본부 확인 점검 : 검역본부장은 시장·군수가 요청한 입식시험 승인 검토시 해당 농장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하고,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 시험 승인

- (3단계) 시장·군수 : 21일간 입식시험

· 가장 감수성이 높은 닭을 시험가축으로 사용

· 모든 축사당 산란계 중추(6~12주령) 최소 5수 이상

- (4단계) 검역본부 승인시 시·군이 제출한 정밀검사 결과, 환경 검사 결과 검토 철저

(2) 관리지역(500m내) 예방살처분 농장중 음성 판정 농장 : 1단계②+ 환경검사 철저

- 분변처리 등 청소·세척·소독 확인 점검 및 환경검사(정밀검사) 결과 이상이 없으며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 경과 후 가축 방역관이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승인(시장·군수)

(3) 보호(3km)·예찰지역(10km) 예방살처분(음성 판정) 농장 : 1단계②

- 분변처리 등 청소·세척·소독 확인 점검 결과 이상 없으면 재입식 가능

※ 분변처리 : 분변에 대한 병원체 검사 및 청소·세척·소독

② 해당 농장 점검시 관련법령 위반 사항 적발시 조치

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

- * (소독설비) 터널식/고정식 소독시설, 고압분무기, 신발소독조 등

⇒ 과태료 부과

- * 과태료 (소독설비 미설치) 1차 100만원, 2차 400, 3차 800

②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- * (방역기준) 출입 전·후 소독, 전용 의복·신발 비치, 소독기록부 작성 등

⇒ 과태료 부과

- * 과태료 (방역기준 미준수) 1차 100만원, 2차 200, 3차 500

③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, 시설기준인 △사육 시설 △ 소독시설 △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

- * 산란계 농장의 경우 집란실 설치, 방충·방서 및 환기시설 구비여부 점검 포함

i)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⇒ 고발 조치

- *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ii) 종계업·종오리업, 부화업자가 사육시설, 부화기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⇒ 허가 취소

iii) 닭·오리 사육업자가 가축사육시설, 환기 시설, 소독시설, 방역시설, 집란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⇒ 3개월 이내 시정 명령(서면) 후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

- * 3개월 시정명령 → 과태료(1차 50만원, 2차 200, 3차 300)

※ i), ii)의 경우 상기 “**Ⅰ 재입식 절차**”에 따른 재입식 불허

※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중복 위반의 경우 : 중한 과태료 부과

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(수개의 질서위반 행위의 처리)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참고1**입식시험 실시 요령(AI SOP 제27조 관련)****1. 입식시험의 준비**

- 가. 시장·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,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·시험가축선정·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.
- 나.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농장내 관리시설과 축사내외·진입로·축산기자재 등의 분변·왕겨·사료 등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(청소)한 후에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다. 시장·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소·세척 및 소독상태,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라. 시장·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시험 승인을 요청(별지 제4호서식 및 증빙자료 첨부)하여야 한다.
- 마. 검역본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시장·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- 바. 검역본부장은 입식시험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시장·군수에 입식시험을 승인하여야 한다.

2. 시험가축의 선정

- 가.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(이하 "시험가축"이라 한다)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(방역지역 외)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(6~12주령의 산란계 중추)이어야 하며, 시험가축의 마리수는 모든 축사당 최소 5수 이상(연동인 경우 구획별 5수 이상)으로 한다.
- 나. 시·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장·군수에게 입식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입식시험의 방법

- 가.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·구입일자·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나.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다. 시·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,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별제 제5호서식에 따라 축사별로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라. 시·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3주 경과후 혈청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4. 재입식의 승인

- 가. 시장·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고,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시험 관련 제반서류(별지 제5호서식, 별제 제6호서식 및 증빙자료)를 첨부하여 가축의 재사육을 위한 입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나. 검역본부장은 시장·군수가 제출한 입식시험 관련 제반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입식 승인 여부를 해당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참고2**시 발생농장 입식시험 전 청소·소독 등 점검표****□ 농장현황**

축산업등록(허가)번호		농가명		축주명	
전화번호		소재지		이동제한해제일	
사육축종		사육두수		사육두수	

□ 입식전 점검사항**가. 청소·소독**

점검내역	점 검 결 과(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□에 ✓)
주택·관리사	입구소독조□, 내부□, 외부□, 거주시 사용물품□, 화장실□
축사	외부□, 입구소독조□, 바닥□, 울타리□, 벽□, 원치커튼□, 기둥□, 천장□, 기구보관 등 창고□, 냉장고□, 연막소독□, 살충제 살포□, 분뇨제거□
운동장	바닥□, 울타리□, 분뇨제거□
작업도구	트랙터□, 차량□, 손수레□, 삽□, 청소도구□, 기타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□

나. 소각·매물

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급여중이던 사료□, 보관사료□, 보관왕겨□
음식물찌꺼기□, 의복□, 신발□, 장화□, 소각가능한 물품□
빗자루 등 소각 가능한 작업도구(빗자루□, 기타□)

다. 강화된 방역시설 상태 및 요건

농장출입구 및 농장내 소독시설 유무□, 전실 유무(장화, 솔, 발판소독조 2개 구비)□
농장주변 울타리 및 출입통제문 유무□, 구서작업 여부(살서제, 쥐덫 등)□
매몰지 부지 확보 여부□, 왕겨 보관 및 차단상태□
※ 관할 시·군은 농장 내·외 농경지, 사유지 등 매몰부지 확인

※ 입식전 농장 점검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입식시험을 하여서는 아니되며, 미흡한 사항을 완벽하게 보완 조치한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시험 추진

참고3**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·입식 전 점검표**

점검일 : 2017년 월 일 / 농장주 (서명 또는 인)

축산업등록(허가)번호		농가명		축주명	
전화번호		소재지			
사육축종		사육두수		사육두수	

□ 이동제한 해제 현황

방역대 내 발생농장 : (농가명)	(축주명)
방역대 내 살처분 및 소독조치 완료일 : ' . . .	
예찰지역 내 정밀검사 판정 결과 및 통보일 : 양성□ / 음성□ (' . . .)	
예찰지역 이동제한 해제일 : ' . . .	

□ 입식 전 점검사항

점검항목	점검결과	조치사항
1. 소독시설 설치 *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관련		
농장 출입구에 차량 등 소독용 터널식/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여부	(○, ×)	미충족시 서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미승인
사람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설치, 차량출입구에 차량 외부, 바퀴 및 흡발이 소독 장치	(○, ×)	
출입자 옷 소독 가능한 분무용 소독시설 설치(1000㎡ 이상)	(○, ×)	
사육시설, 창고, 관리사무실, 집란실 등 출입구 신발 소독조 설치 여부	(○, ×)	
소독약 보관용기·희석용기 및 농장 시설·장비 전용 소독용 고압분무기 구비 여부	(○, ×)	
2. 차단방역 시설 및 조치 *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6		
농장 출입구 차량진입 상시 차단 여부	(○, ×)	미충족시 서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미승인
출입소독시설에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여부	(○, ×)	
축사별 축사전용 작업복 및 전용 신발 비치	(○, ×)	

점검항목	점검결과	조치사항
방역실 내 농장종사자 및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별도의 작업복·신발·장갑 등 구비	(○, ×)	미충족시 서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미승인
야생동물, 설치류 등 사육가축 이외 동물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, 배수로 등에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설치	(○, ×)	
살서제, 쥐덫 등 구서작업 실시 여부	(○, ×)	
3. 축사 청소·소독 상태 * AI방역실시요령(고시) 제27조 관련		
(주택·관리사) 입구소독조, 내부, 외부, 거주시 사용물품, 화장실	(○, ×)	미충족시 서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미승인
(축사) 외부, 입구소독조, 바닥, 울타리, 벽, 원치커턴, 기둥, 천장, 기구보관 등 창고, 냉장고, 연막소독, 살충제 살포, 분뇨제거	(○, ×)	
(운동장) 바닥, 울타리, 분뇨제거	(○, ×)	
(작업도구) 트랙터, 차량, 손수레, 삽, 청소도구, 기타 축산기자재	(○, ×)	
4. 오염물건 등의 소각·매물처리 적정 여부 * AI방역실시요령(고시) 제27조 관련		
(사료·왕겨) 발생농장 급여 중이던 사료 및 음식물찌꺼기, 보관 사료, 보관 왕겨	(○, ×)	미충족시 서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미승인
(방역작업 도구) 의복, 신발 및 장화, 빗자루 등 작업도구	(○, ×)	
(기타) 기타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: _____	(○, ×)	
5. 매몰지 부지 확보 *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 관련		
농장 내·외 농경지, 시유지 등 매몰지 부지 확보 여부	(○, ×)	미충족시 서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미승인

점검자 : 소속

직

이름

(서명)

참고4

축산업 허가제 관련 축산법 준수여부 체크리스트

점검일 : 2017년 월 일 / 농장주

(서명 또는 인)

농장명		업종		주소 및 연락처	
축종		사육면적(m ²)		사육두수 *	

* AI 발생 농장은 사육두수 대신 실처분 두수 명시

점검 항목			준수여부	조치사항
① 축산업(종계·오리업, 부화업, 닭·오리 사육업) 허가 여부 (법 제22조제1항)			(○, ×)	미허가시 고발조치
② 허가기준 (법 제22조제1항,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[별표1])	○ 사육시설구비여부	<종계·오리업, 부화업> * 가축사육시설(단열·환기시설, 품종/세대/사육단계별 시설구분, 집란시설 및 종란보관시설 등), 부화기(발육기 및 발생기)	(○, ×)	미충족시 허가취소
		<가축사육업> * 가축사육시설, 환기시설 등	(○, ×)	
	○ 소독시설 구비여부 <공통> * 차량 출입구에 차량 소독시설, 농장출입구에 출입자용 소독시설, 출입자 방문기록부, 신발 소독조(관리사무실, 사료창고, 가축사육시설), 농장전용 고압분무기 등		(○, ×)	미충족시 서면으로 시정명령 ↓ 3개월 이내 불이행시 과태료 (①회/50만원, ②/200, ③/300)
	○ 방역시설 구비여부 <공통> * 차량진입 차단장치, 출입문 및 울타리·담장, 출입통제 안내판, 출입자용 작업복·신발·장갑, 방역실, 물품 반입창고, 사육시설과 차단된 전실, 야생동물 차단망 등		(○, ×)	
③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고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(법 제26조,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4호)			(○, ×)	과태료 (①회/100만원, ②/250, ③/500)
④ 축산업 보수교육(2년 이내 1회) 이수 여부(법 제33조의2제3항)			(○, ×)	과태료 (①회/20만원, ②/50, ③/100)

□ 점검자 : 소속

직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※ 조치사항에는 가금농장 점검 후 실제 조치사항을 기재

예) 전실 미비에 따른 시정명령,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

참고5**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관련 체크리스트**

- ☐ AI 발생농장 중 무허가축사 현황 파악을 위해 참고자료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지자체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 보유 여부를 점검하여 제출
- ※ 해당농장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관련하여 '18.3.24일까지 법 적용 유예기간 중에 있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관련 무허가축사 보유여부는 재입식 허용여부 점검과는 관련이 없음

점검 항목	적법 여부
① 무허가 축사 보유 여부	무허가(전체, 일부), 적법
②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 여부	무허가(전체, 일부), 적법
③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 여부	무허가(전체, 일부), 적법

- ☐ 지자체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해당 농장에게 '18.3.24일까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적합하게 허가/신고를 해야 하고 '18.3.24일 이후 1단계 대상 농장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할 경우, 축사폐쇄, 사용중지 명령, 1억 이하의 과징금 부여(가축분뇨법 제12조)함을 사전에 철저히 고지

< 단계적 적법화 대상 시설규모 >

구분	1단계 '18.3.24일까지	2단계 '19.3.24일까지	3단계 '24.3.24일까지
돼지	축사면적 600㎡ 이상	축사면적 400㎡ ~ 600㎡	축사면적 400㎡ 미만
소	축사면적 500㎡ 이상	축사면적 400㎡ ~ 500㎡	축사면적 400㎡ 미만
닭·오리	축사면적 1,000㎡ 이상	축사면적 600㎡ ~ 1,000㎡	축사면적 600㎡ 미만

참고6**발생농장에 대한 재입식 세부 절차**

- ① 방역농장 예찰지역 이동제한 해제(관할 시·도 및 시·군)
 - * 고시 제21조 제4항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
- ② 발생농장 재입식 신청(발생농장 → 관할 시·군)
 - * 발생농장에서 청소(축사내 분뇨 등, 정밀검사) 및 세척·소독 완료 후 관할 시·군에 신청
- ③ 발생농장에 대하여 1차 점검 실시(관할 시·군)
 - * 관할 시·군에서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 및 세척·소독, 불임 1, 2 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항목이 적합한 지를 점검
- ④ 발생농장에 대하여 입식시험 승인요청(관할 시·군 → 검역본부)
 - * 1차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, 검역본부에 입식시험 승인요청(요청시 점검표 및 근거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)
- ⑤ 발생농장에 대하여 2차 점검 실시(검역본부)
 - * 검역본부에서는 관할 시·군에서 요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(서류 검토시 미흡한 경우 반려),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
- ⑥ 발생농장 입식시험 가능 통보(검역본부 → 관할 시·군, 시·도 시험소)
 - * 검역본부에서 현장 점검시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경우에 입식시험을 하도록 관할 시·군 및 시험소에 통보
- ⑦ 발생농장 21일간 입식시험 실시(시·군, 관할 시험소)
 - * 발생농장에 대하여 바이러스 잔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란계 중추(6~12주, 동별 5수)를 이용한 입식시험을 실시(임상검사, 정밀검사, 환경검사)
- ⑧ 입식시험 정밀검사 결과 통보(관할 시험소 → 시·군)
 - * 임상검사,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를 관할 시·군에 통보
- ⑨ 발생농장 입식시험 결과 및 입식승인 요청(시·군 → 검역본부)
 - * 임상검사,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 및 입식시험 관련 서류 등을 검역본부 통보
- ⑩ 검역본부 검토 후 최종 승인(검역본부→관할 시·군, 시·도 시험소)
 - * 검역본부에서 농장 점검사항 및 입식시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 승인

발생농장 잔존물 처리 및 차단방역요령

① (지자체) 발생농장 살처분·매몰 시 사후처리팀 운영 철저

- 발생농장 사료, 볏짚, 분뇨 등에 대하여 소각·매몰 처리
- 발생농장(축사 내외, 사료·왕겨 창고, 분뇨처리장, 살처분·매몰 장소, 차량·장비·도구 등)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
- 살처분 투입 또는 사용된 인력·장비·도구 방역복·장화 등의 작업 폐기물 소독·폐기 철저
- 살처분 장소에서 매몰 장소로 이르는 운반경로 등에 대한 소독 철저

② (지자체) 발생농장 살처분·매몰 후 사후관리반 편성·운영 철저

- 소독 약품 확보 및 배포
- 소독차량을 이용하여 발생농장 및 발생지 소독
 - * 소독차량의 동원 및 방역지역별 일일 소독 실시 계획 수립
- 『닭·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요령』에 의거 분뇨처리 등

③ (사후관리반·농장주) 발생농장 및 축사 소독 철저

- 농장내 사용약품 : 매몰, 폐기 또는 밀폐 훈증소독
- 농장 내 사료창고·축산도구창고·사택 : 청소 및 밀폐 훈증소독
- 분뇨 처리장비·도구 : 철저한 소독
 - * 스키로더·차량 삽·괭이·리어카, 고압분무기 등의 소독장비 등
- 농장 진입로, 농장내 주요 통행로, 축사주변, 분뇨처리장 등 오염 가능 지역에 대하여 매일 소독 실시

④ (사후관리반·농장주) 농장 및 축사 내로 개·고양이, 설치류 및 야생조류 등의 접근 차단

- *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약 2m 폭으로 둘러 도포
- * 철새, 야생조류 등이 농장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그물망 보완, 축사 구멍 등 차단 보완, 쥐 등을 막기 위해 주기적 구서제 비치 등

[5] (사후관리반·농장주) 축사소독(축사 내 바닥 및 분뇨소독) 신속 실시

- 축사바닥 생석회 도포 또는 유효소독제 살포(2일 간격으로 3회 이상) 후
축사 훈증소독(축사 밀폐 철저 및 사용방법 준수) 실시

[6] (사후관리반·농장주) 닭·오리농장 등 가축분뇨처리 요령 준수

- 발생농장의 분뇨는 농장내 매물 후 당일 농장 내·외부 등이 흠뻑 적
셔지도록 철저히 소독한 후, 축사 내부·외부를 21일간 1주 간격으로 3
회 이상 소독 실시
- 분뇨의 매물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축사별로 내부에 분변을 한곳
으로 모아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(흙이 보일 때까지 긁어 모음)

1) 생석회 이용시

- 가. 살처분 후 당일 축사내부에 대하여 충분하게 분무 소독실시
- 나. 축사 바닥 분뇨에 대하여 로타리 작업 실시 및 한곳에 모음
- 다. 모은 분변의 표면이 수분이 적은 상태가 되면, 분뇨 표면에 생석회를
충분히 도포 및 보관(열반응이 끝난 상태에서 비닐 도포)
- 라. 생석회 도포 및 분무소독시, 생석회와 소독액 및 비닐 등의 접촉 되지 않도록 주의
※ 21일간 1주 간격으로 3회이상 소독 실시

2) 생석회 미이용시

- 가. 살처분 후 당일 축사내부에 대하여 충분하게 분무 소독실시
- 나. 축사 바닥 분뇨에 대하여 로타리 작업 실시 및 한곳에 모음
- 다. 생석회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축사내 모은 분변에 유효
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피복 및 원치커튼 등으로 밀폐·보관
※ 21일간 1주 간격으로 3회이상 소독 실시

[7] (농장주)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 내 출입통제 및 소독 철저

- *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출입자 통제 철저
- * 살처분·매물 후 농장 내 오염 물건 등에 대한 청소·세척·소독 관리 철저